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2. 3.

경기도교육청

I. 목 적	1
II. 방 침	1
III.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3
IV. 영역별 전형 관리	4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4
2.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6
3.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	7
4.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	8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9
6. 특수목적고등학교	10
7. 전기학교 추가모집	15
8. 추가모집	15
9.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전형	16
10.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선발	16
11. 특례입학대상자 선발	17
12.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17
V. 2023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18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I 목적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합리성·타당성·다양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인다.

## II 방침

1.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전형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1조)
2. 일반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모두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으로 선발한다.
3.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의 입학전형 방법은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82조)
4.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5. 입학전형에 관한 교육감 자문 및 심의 기구로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6. 모든 고등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외부위원 포함 권장)
7.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8.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별도 산출식에 따른다.

9. 이중지원은 절대 금하며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지도한다.

- 전기학교는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⑦항)
  - 단,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한 경우 직업계열 특성화고<sup>\*</sup>에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직업계열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불합격한 경우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sup>\*\*</sup>에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⑧항)
  - 일반고 특성화학과는 직업계열 특성화고의 지원방법을 준용한다.
- \* 직업계열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예-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 등)
- \*\*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 직업계열 특성화고의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전기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 전·후기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이중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전기학교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경기도 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지원자가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등

10.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지정 취소 시에는 전환된 학교 유형의 전형계획에 따른다.

- 11.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입학전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요소는 내신 등으로 최소화한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학교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13. 2023학년도 고입 전형 관리 업무는 본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III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구분	업무 내용		일정	
전기 학교	■ 경기북과학고(과학고)	원서접수	2022.08.29.(월)~09.01.(목)	
		전형기간(소집면접)	2022.11.18.(금)	
		합격자 발표	2022.12.01.(목)	
	■ 마이스터고	원서접수	2022.10.17.(월)~10.20.(목)	
		전형기간	2022.10.24.(월)~10.28.(금)	
		합격자 발표	2022.11.01.(화)	
	■ 예술고	원서접수	2022.10.17.(월)~10.20.(목)	
		전형기간	2022.10.24.(월)~10.28.(금)	
		합격자 발표	2022.11.01.(화)	
	■ 체육고	원서접수	2022.10.25.(화)~10.28.(금)	
		전형기간	2022.10.31.(월)~11.04.(금)	
		합격자 발표	2022.11.14.(월)	
	■ 특성화고 ■ 일반고 특성화학과	[특별전형]	원서접수	2022.11.07.(월)~11.09.(수)
			전형기간	2022.11.10.(목)~11.12.(토)
			합격자 발표	2022.11.14.(월) 이내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1.21.(월)~11.22.(화)	
		전형기간	2022.11.23.(수)~11.24.(목)	
		합격자 발표	2022.11.25.(금) 이내	
[추가모집] ■ 전기학교 미달교	원서접수	2022.12.01.(목)~12.02.(금)		
	합격자 발표	2022.12.05.(월) 이내		
후기 학교	평준화지역 정시모집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2022.12.09.(금)~12.15.(목)	
		배정 예정자 발표	2023.01.06.(금)	
		배정 학교 발표	2023.01.31.(화)	
		등록 기간	2023.02.01.(수)~02.03.(금)	
		추가 배정 및 발표	2023.02.16.(목)	
		추가 배정 학교 등록	2023.02.16.(목)~02.17.(금)	
	비평준화지역 정시모집 ■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2022.12.09.(금)~12.15.(목)	
		합격자 발표	2022.12.19.(월) 이내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교 ■ 외국어고 ■ 국제고 ■ 자율형 사립고	1단계	원서접수	2022.12.09.(금)~12.15.(목)
			전형기간	2022.12.16.(금)~12.17.(토)
			합격자 발표	2022.12.19.(월) 이내
		2단계	서류접수	2022.12.20.(화)~12.21.(수)
			전형기간	2022.12.22.(목)~12.29.(목)
			합격자 발표	2022.12.31.(토) 이내
	[추가 모집] ■ 전기학교 미달교 ■ 비평준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미달교 ■ 외고, 국제고, 자사고 미달교	원서접수	2023.01.09.(월)~01.12.(목)	
합격자 발표		2023.01.16.(월)		

- ※ 공군항공과학고(마이스터고) 응시자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타 전기학교(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타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 불가
- ※ 이 전형 일정은 교육부 지침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동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는 정해진 발표일 이내에 공지될 수 있음
-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2.11.17.(목)

## IV

## 영역별 전형 관리

### 1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1) 전형 관리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학생 선발은 다음 사항에 의거 선발·배정한다.

(1)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다.

(2) 학생 배정은 다음 방식에 의한다.

(가) 수원학군, 성남학군, 안양권학군, 부천학군, 고양학군, 광명학군, 안산학군, 의정부학군, 용인학군 공히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에 의거 실시한다.

(나)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학생의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한다.

(다) 지원자는 학군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원한다.

나) 평준화지역 내 교육감 배정 비적용 일반고등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른다.

#### 2) 전형 방법

가)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 신입생 선발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나) 지원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지원의 제한

- ①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하고, 위 (2)~(4)항의 대상자 중 평준화지역 거주자는 당해 평준화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평준화지역 내 거주자 또는 평준화지역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비평준화지역 소재 고등학교 응시자,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 응시자,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 ② 2023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③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군 내·구역 내 1지망을 외교, 국제고, 자사고로 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한다.

다) 체육특기자 선발은 교육감 소속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평준화 지역별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①항, 제③항)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배정한다.

마) 전문의의 확인을 받은 **지체장애인(희귀·난치 질환 포함)**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②항, 제③항)

바)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정시모집 시기에 학교별로 전형한다.

## 2) 전형 방법

- 가) 당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 나) 지원 자격

- (1)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4)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 지원의 제한

2023학년도 특수목적고(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특성화고 등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①항)

- 다) 체육특기자는『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마)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바) **특기·적성교육 영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체육특기자 5% 포함)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①항)



## 1) 전형 관리

- 가) 일반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학과 중 추천입학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일반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학과 추천입학제는 학교별로 실시한다.
- 다) 추천입학제 적용학교는 다음 선발 방법에 의거 학교장이 모집할 수 있다.
  -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
  - 내신성적 및 적성검사 병행 실시

## 2) 전형 방법

- 가) 내신성적 반영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준한다.
- 나)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별도의 전형 방법을 정하여 **일반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다) 추천입학제 지원 자격은 비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
- 라) **체육특기자**는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마)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바) 귀국학생(특례입학대상자 포함)의 전형은 학교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사) **특기·적성교육 영역**을 특별히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정원의 10% 범위 내(체육특기자 5% 포함)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①항)
- 아)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4

##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

##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2) 전형 방법

- 가)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반영한다.

※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그 기간 내에 단위 학교가 실시한 모든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100%로 환산하여 정함.

- 다)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라)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마)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별도의 전형 방법을 정하여 일반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바) 모집 단위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다.

- 사)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아)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전형 관리

- 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2) 전형 방법

- 가)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천으로 선발한다.
- 나)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은 금지한다.
- 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 라)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한다.
- 마)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며 원점수, 과목평균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한다. 내신 반영 과목, 반영 대상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 비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 바) 면접은 학생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 (집단 면접 불가)
  -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
  - ※ 1단계에서는 해당 교과 내신성적 및 출결점수 외의 기타점수 반영 금지
- 사)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아)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자)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 소재지의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 심각하거나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 요소는 최소화하되, 부득이하게 면접·실기 등의 집합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지침 등에 따른 집합 전형 대체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나) 전형 방법

- (1) 입학전형위원회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한다.

※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핵심인성요소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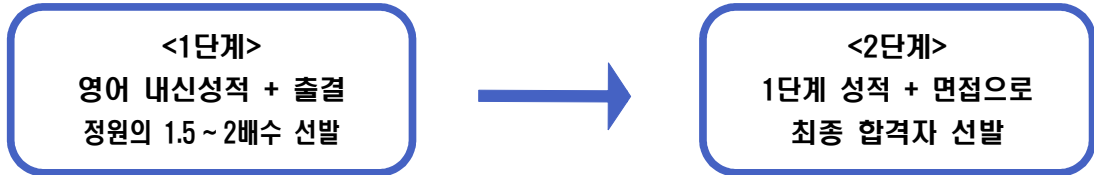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 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선행학습 유발요인 배제

- (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한다.

-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과 인성 영역(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실시
- 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위원과 본부 진행요원으로 구성
- 입학전형위원의 면접조 구성
  - 학교 위촉 입학전형위원 2인 이상(교내 교사 또는 외부위원 위촉)
    - ※ 입학업무담당자 위촉 배제
    - ※ 외국어 전공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위촉 권장
  - 도교육청 위촉(타학교 위촉위원 포함)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라)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은 금지한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로 모집 정원의 1.5~2배수 선발

-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자동 계산

$$\text{영어 내신성적} = \text{중 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원점수, 과목평균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 반영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국어와 사회 교과 성취도 수준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반영함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 3학년 1학기 사회 →  
2학년 2학기 국어 → 2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1학기 국어 → 2학년 1학기 사회

※ 사회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중학교 2, 3학년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 하여 활용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는 경우는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출결 상황 산출 방식

$$\text{출결} = -(\text{미인정결석 일수} \times \text{가중치}^*) \quad * \text{가중치는 학교별 자율결정}$$

- 외국인, 특례입학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 및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2단계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으로 선발

○ 면접 점수 산출 방식

$$\text{면접} = \text{자기주도학습 영역(공과 끼 영역)} + \text{인성 영역}$$

※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집단 면접 불가)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

※ 1단계에서는 해당교과 내신성적 및 출결점수 외의 기타점수 반영 금지

(다)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 (단, 타 시·도 중 2023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라)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2) 과학고등학교(경기북과학고)

### 가) 전형 관리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나) 전형 방법

(1) 2023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모집 정원의 100%를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포함)

※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한다.

(2)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변형된 형태의 질문평가와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은 금지한다.

(3) 교과지식이나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등은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는다.

(4) 내신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수학·과학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 과목별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반영하고 원점수, 과목평균은 미반영

(5) 내신성적 반영 학기, 과목별 비중, 내신성적 산출방법, 내신성적·서류평가·면접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6) 모집 단위는 경기도 내로 한다.

(7)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 참고 사항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2020.11.17., 교육부)

### 3) 예술고등학교

####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나) 전형 방법

- (1)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3)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4) 모집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 (5)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4) 체육고등학교

####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나) 전형 방법

- (1)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3)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4) 모집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
- (5) 기타 전형 방법에 대해 학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가) 전형 관리

- (1)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지원 자격은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의한다.

### 나) 전형 방법

- (1)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3) 내신성적 반영 시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학기말 성적**까지로 하고, 출결상황, 봉사활동, 학교활동 실적은 **3학년 9월 말**까지로 한다.
- (4) 학교별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한다.
- (5) 모집 단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6)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
- (7) 학교별 전형요항에 따라 모집 정원의 5%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 7

## 전기학교 추가모집 [2022.12월 실시]

## 1) 전형 관리

- 가) 전기학교의 추가모집은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전형요항에 명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에 한하여 실시한다.
- 나) 추가모집 지원 자격은 학교별 지원 자격자 중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자와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 2) 전형 방법

내신성적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내신성적 기준을 전형요항에 명시한다.

## 8

## 추가모집 [2023.1월 실시]

## 1) 전형 관리

- 가)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중 모집 정원 미달 학교는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단, 전형요항은 정시모집 시 승인 받은 것에 준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
- 나) 지원 자격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지원 조건과 동일하나, 2023학년도 고입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다) 추가모집에서도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원 내 결원 범위의 신입생을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제92조)

## 2) 전형 방법

- 가) 추가모집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까지 반영한 내신성적으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 나) 내신성적 반영은 경기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따른다.

## 1) 지원 자격

2022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2년 이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 2022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 2022.04.09.(토)

## 2) 선발(배정) 방법

## 가) 학교장 전형교

교육감이 승인한 『2022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 나) 교육감 전형교

내신성적에 의거하여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의 1%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만큼 구역별로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 후  
전산 추첨 배정한다. 단, 정시모집에서 탈락자가 발생한 학군의 경우 검정고시 환산점이  
해당 학군 정시모집 커트라인(합격점)보다 낮은 경우는 지원 불가

- 1)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학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  
하며,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  
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모집 인원내 포함하여 정원 내로 선발하되,  
교육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2)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선발은 학군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3)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수만큼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 11

### 특례입학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4호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특례입학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단, 제1호, 제4호 대상자는 정원 내로 선발함)

## 12

###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 1)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다.
- 2) 교육청은 학교별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V

# 2023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등

## 1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2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 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함
-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 나.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소년·소녀 가장 (형제·자매 포함)
- ② 조손가정 학생
-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다.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첫째 자녀부터 가능)
-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2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⑥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⑦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장의 요청으로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등

# 3

##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 가.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1.5배~2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학과별 전형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 가능)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 4 기타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